

=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9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5. 13

다. 상 정 일 자 :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08. 5.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하태생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롯데건설(주)에서 다대동933-8번지상 토지 1,720.5㎡를 공공시설 건설부지로 우리구에 기부채납 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나. 취득재산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기부채납 사유
다대동933-8	대지	1,720.5㎡	1,462,425천원	공공시설 건립부지 제공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
-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은

- 롯데건설(주)에서 사하구 다대동 933-8번지상 토지 1,720.5㎡를 공공시설 건설부지로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 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 본 건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근거와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

나.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근거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으나,
- 본건의 경우는 나대지 상태의 직방형 토지로 재산관리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2007.11.28 우리구와 롯데건설(주)간에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에도 기부에 따른 특이한 조건이 수반되지 않아 적법성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

다. 기부채납 재산의 실효성 부분은

- 본 토지는 1986년 구획정리가 완료된 토지로 측면은 다대1동사와 접해있고, 전면은 중로3류 도로와 접해있어 앞으로 노인정 등 공공시설건립 부지로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 재산가치면에서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462백만원 상당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부채납 재산의 실효성은 높게 나타남.

라. 결론적으로, 본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은

-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기부채납 행위의 적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 기부채납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도 높아 공유재산으로서 실효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